

歐美各國의 電氣安全體制

〈第6回〉



(2) 需用家 電氣設備(自家用 電氣設備 除外)에 관한 安全管理規制

(i) 電氣設備에 대한 規制

(a) 電氣設備를 신설 또는 증설할 때의 許可 등의 手續절차

電氣設備의 工事は 그 設備場所에 따라 각기 적용되는 法令 및 IEE 規程, 기타의 工事基準에 따라 시행되지만 일반적으로 工事着手前의 許可 또는 承認을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工場, 事業場 등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는 電氣 공급상의 문제에 대하여 그 도급電氣工事業者가 관계되는 地區配電局과 협의한 후에 工事に 착수하는 관습으로 되어 있다.

(b) 電氣設備의 檢査 및 그 維持運用

一般需用家-英國에서는 옛부터 一般需用家の 電氣設備에 대한 公式檢査는 없었지만 電氣事業이 國有化된 현재도 변함이 없다.

다만, 1937年 電氣供給規程(第22~35條)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수용가 電氣設備에 대해서는 供給接續을 할 의무 또는 供給을 계속할 의무가 電氣事業者에게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需用家 電氣設備의 工事が 완료되면 供給接續에 앞서 地區配電局이 檢査와 試驗을 한다. 이 檢査는 各地區配電局이 1937年 電氣供給規定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있는 조건 및 需

用家 電氣許可가 구비하여야 할 원칙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需用家 電氣設備의 일반적인 工事方法에 관한 檢査는 하지 않고 保護裝置, 接地回路 등의 檢査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一般需用家に 관한 한 직접적으로 그 許可의 유지운동에 대하여 檢査를 규정한 法令은 없다. 다만, 需用家가 地區配電局의 檢査를 희망할 때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檢査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37年 電氣供給規程에서는 電氣의 供給에 관하여 需用家와 電氣事業者間의 일반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또 1954年 出入權法(Right of Entry (Gas and Electricity Boards) Act, 1954)에 의해 人命 또는 財産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非常時 및 (1) 敷地의 占有者 承認, (2) 該當當局의 公認이 있을 때는 電氣局이 需用家 敷地에 出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37年 電氣供給規程 第22~35條는 需用家와 電氣事業者間의 일반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 條文에는 電氣事業者 自體가 需用家 電氣設備의 적절성과 또는 그 상태 특히 容量 및 安全性에 관하여 충분한 것이고, 또 供給契約上의 電流容量이 충분한가에 확신이 없으면 어떠한 需用家에 대하여도 電氣供給을 개시, 또는 後衛하는 第32條를 條件으로 해서 電氣공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第27, 28 및 29條에서는 IEE 規程의 조항에 따른 電氣設備은 이들 조문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IEE 規程을 公式로 승인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需用家 電氣設備가 이 IEE 規程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인 必要事項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電氣事業者에 대해서, 需用家 電氣設備가 따로 적절한 이유없이 단지 IEE 規程에 정하여져 있는 것 이외의 材料, 配線方式 또는 器具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需用家 電氣設備에의 접속 또는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法令이나 規定은 없다.

電氣의 供給 또는 接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第33條에 의하여 電氣事業者가 需用家에 대하여 文書로서 통지하여야 하고 또 電氣事業者가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需用家가 不服할 때는 다시 動力大臣에게 提訴할 권리를 주어 第33條에 규정된 방법, 즉 動力大臣이 任命한 電氣檢査官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需用家 또는 그 公認代理者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電氣事業者가 需用家 電氣設備의 技術基準으로서 IEE 規程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으나, IEE 規程이 절대적인 技術基準이기에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規定은 없고 동시에 需用家가 IEE 規程 以上の 工事基準을 電氣事業者로부터 요구받는 데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第32條(여러가지 상태에서의 供給의 停止)는 電氣事業者가 電氣의 供給을 停止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으로, 非常時 기타의 조건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다. 즉, 電氣事業者가 第一義的으로 公共의 安全上 또는 다른 需用家에 대한 능률적인 電氣의 供給을 부당하게 방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직접행위로서 필요할 때는 非常時의 作業으로서 供給의 直接停止가 公認되고 있다. 기타의 경우로서는 電氣事業者가 需用家에 대하여 電氣事業者의 사정을 올바르게 연락한 후에 停止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兩者間에 생긴 異議의 해결에 대하여는 第33條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異議가 해결이 안될 때는 非常時를 제외하고는 電氣事業者에게 供給을 정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표 8) 需用家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관한 法令 및 所管當局

區 別	關 係 法 令	所管當局
一般需用家	「1947年電氣法」에 의하여 效力을 갖는 것 「1937年電氣供給規程」	動力省
映 畫 館	「1909年 및 1952年映畫法」에 의한 「映畫規程」	內務省
工場作業場	「1937年工場法」에 의하여 效力을 갖는 「1908年 및 1944年電氣(工場法) 特別規程」	勞働省(以前에는 內務省)
炭坑 및 기타 鑛山	「1954年鑛山 및 採石所法」에 의한 「1956年石炭 및 其他 鑛山에 관한(電氣) 規程」	動力省
金屬鑛山	「1954年鑛山 및 採石所法」에 의한 「1956年雜鑛山(電氣) 規程」	動力省
採石所	「1954年鑛山 및 採石所法」에 의한 「1956年採石所(電氣) 規程」	動力省
劇場 및 기타 公衆이 來集하는 場所 등의 特定한 建物	地方當局의 規程 (예를들면 London County Council 規程)	地方當局

第33條(電氣事業者에 의한 通告, 異議의 해결에 관한 手續, 提訴)는 이 규정에 따라 需用家에 대하여 電氣의 供給을 개시하고 계속 또는 再開하는 것을 거절할 때는 電氣事業者가 需用家에 대해 通知書 발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通知書에는 電氣事業者가 거절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또 근거조문을 이어서하거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이들 通知書, 기타 문제에 대하여 발생하는 電氣事業者와 需用家 사이의 異議는 어느 편이든 신고에 의해 動力大臣이 임명하는 電氣檢査官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動力大臣에게 提訴할 權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不良開所가 있어 供給을 정지할 때는 不良部分만 분리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적용되고 또 不良開所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단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 需用家에 대하여 그 開所만을 都給業者에 의뢰하여 보수하도록 충고하는 통지서가 송부된다.

炭鑛, 金屬鑛山 및 採石場—電氣 供給상의 점

사는 一般需用家の 경우와 같다. 다만 1937年 電氣供給規程中 第27, 28, 29, 30, 31 및 32條中の需用家 電氣設備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는 다음에 기술하는 工場, 作業場 등의 경우와 같이 그 장소의 성질상 人身安全 見地에서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電氣設備에 관한 조건(主로 人身安全上)은 動力者の 鑛山部電氣規程에 위임하는 方式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鑛山 및 採石場에서의 電氣設備에 관해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鑛山部(動力者) 電氣規程이 적용되며, 動力者 鑛山檢査局이 있어 1954年 鑛山 및 採石場法에 따라 檢査가 실시되고 있다.

工場, 作業場 등—電氣 供給上の 電氣局 檢査는 一般需用家の 경우와 같다. 단 1937年 電氣供給規程中 第27, 28, 29, 30, 31 및 32條中の需用家 電氣設備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 이때는 그 장소의 성질상 人身安全의 見地에서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電氣設備에 관한 條件(主로 人身安全上)은 工場法에 의한 電氣特別規程에 위임하는 方式으로 되어 있다.

勞働大臣은 工場法 第145條에 의하여 工場檢査官을 임명하고 있으며, 이 檢査官은 수시로 부지를 방문하여 그 工場의 安全에 관해 충고를 준다. 그러나 檢査官의 忠告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法律違反이 되는 것은 아니고 法的強制力이 있는 것은 法律 및 規程 그 자체 뿐이다.

勞働省에는 工場檢査局(Factory Inspectorate)이 있으며, 工場檢査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工場法 第146條).

(1) 檢査官이 그 안에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주야간을 막론하고 工場內나 기타 모든 部分에 들어가 檢査하고 調査할 수 있고, 또 晝間에는 工場이면서 한편 빌딩의 일부인 장소로서 폭발성 또는 可燃性物質이 저장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2) 檢査官의 임무수행상 중대한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는 警官을 대동할 수 있다.

(3) 本法律에 의하여 보관되는 登錄, 證明書, 申告書 및 調書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

을 檢査하고 調査하며 또한 사본을 취할 수 있다.

(4) (省略)~

(5) 檢査官의 권한으로 工場에서 만난 사람에게 누가 工場의 점유자인가 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檢査官은 단독으로나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他人 立會下에서나 本法律에 의한 사항에 관해서 工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조사된 사항에 대한 證言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省略)

(8) 本法律의 시행상 필요로 하는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당초에 기술한 1937年 電氣供給規程에 의한 電氣局의 檢査, 工場法에 의한 工場檢査官의 檢査와의 관계는 전혀 없으며, 前者는 주로 供給上の 安全, 後者는 人身安全上에 주안을 둔 檢査로서 별도로 檢査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다만, 電氣局이 工場, 作業場 등에 高壓으로 電氣를 供給하고자 할 때는 電氣局은 工場檢査官에 通知하여야 한다(1937年 電氣供給規程 第30條).

工場法 및 同法에 의한 電氣特別規程의 준수 책임은 工場法이 적용되는 부지의 점유자에게 있으나 일반적으로 電氣設備의 관리상 대표자로서 監督電氣技術者(Supervising Electrical Engineer)가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占有者는 그 사람의 工場 또는 作業場에 고용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責任을 지고 있고 占有者가 계약한 도급업자 및 그 從業員의 일이 그 工場 또는 作業場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상적 업무에 관계가 없을 때는 도급업자의 일의 종류에 따라 占有者의 責任이 되는 경우와 도급업자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

工場法에서는 占有者가 이 法律 또는 特別規程을 위반하여 사람을 死傷시켰을 때는 起訴되고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또 高等裁判所에서의 많은 判例에 따르면 이 法律의 一般的 해석으로서 占有者의 책임은 노동자 자신의 熱中, 태만, 不注意 또는 無知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擴大解釋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設備 및 여러 裝置는 거의가 Fool-Proof 정도로 안전하여야 한다.

事故가 없는 경우라도 이 法律 및 特別規程의 위반에 대하여 占有者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또 노동자에 대해 安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法律에 규정된 安全方策 또는 安全器具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任意로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自己 또는 他人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工場自體에 관한 한 占有者는 어떠한 사람의 安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만일 占有者가 이 法律 및 特別規程 위반으로 생긴 사고에 도급업자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占有者가 責任을 져야 한다.

이 法律 및 特別規程 위반에 대하여서는 罰則이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有罪가 되고 그 위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金額의 과료가 부과된다.

劇場, 映畫館 기타 大衆이 모이는 장소-映畫館에 대해서는 1909年 및 1952年 映畫法 및 이에 의한 映畫規程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 있지만 이에 의한 檢査는 地方當局에 위임하여 실시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또 地方當局 自體에서도 劇場, 公共建築物, 音樂室, 기타 공중이 모이는 建物 등 특정한 건물에 대하여 條例를 만들어 公衆安全上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檢査를 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이들 檢査는 그 장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非常時의 安全上의 배려가 중요하고 建物의 구조상의 조건과 함께 電氣의으로는 非常用電源, 火災豫防上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관점에서 檢査된다. 이 경우의 電氣의인 技術基準로서는 일반적으로 IEE 規程이 적용되고 이를 條例에 의해 強制 施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ii) 電氣工事者에 대한 規制

電氣工事者에 관해서는 法令으로 된 면허제도 또는 등록제도가 없다. 자주적인 등록제도가 있을 뿐이다.

電氣工事都給協會(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이協會는 1901년에 설립되고 1904년에 商務省에서 正式으로 승인된 全國的團體로서, 設立以來 都給業者의 技術, 實技, 商業上의 경험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全員이 된 都給業者의 登錄制度를 실시하여 왔다. 또 工事의 保

證方式을 채택하여 不良工事 또는 不良材料에 대해서는 全員都給業者 고객에 대한 保證업무를 하여 왔다.

電氣事業이 國有化됨에 따라 당시의 英國電氣廳과 이協會가 電氣工事都給者에 관해서 협의의를 하여 「電氣都給行爲 및 小賣를 관리하는原則의 提要」(Summary of Principles Governing the Conduct of Electrical Contracting and Retailing)를 채택하였다. 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電氣工事都給에 관한 全國檢査審議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電氣工事都給에 관한 全國檢査審議會(National Inspection Council for Electrical Installation Contracting-NICEIC)-英國에서는 法的으로는 電氣에 관한 지식이나 실지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電氣工事都給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電氣設備은 전문적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人命 또는 財産에 위험을 줄 때가 있고 오늘날에는 電氣器具의 종류, 數 및 電氣의 需要가 더욱 증대하고 있고 동시에 電氣設備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NICEIC가 목적하는 것은 모든 우수한 電氣工事都給者의 자발적인 등록제도로 다른 나라에서 강제적인 試驗이나 登錄制度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과 동등한 일관된 設備施工基準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다.

電氣工事都給을 業으로 하고 또 이 심의회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그 大小를 불문하고 누구나 名簿에 登錄되고 公表되도록 되어 있다.

그 활동상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審議會는 승인한 電氣工事都給者의 명부를 보관한다. 이 명부에 등록된 5,000이상의 단체는 私企業이건 地區配電局이건 「良質의 材料를 사용하여 적절한 감독하에 유능한 技術者에 의하여 工事を 실시한다」는 것을 保證하고 있다. 都給業者의 工事內容을 판단하는 기준은 IEE 規程이다.

(2) 審議會는 都給業者의 감독자를 심사하는 동시에 都給業者의 工事を 檢査하는 檢査員을 두고 있다(16名 程度). 이 檢査員은 全國에 배치되어 있어 都給業者의 工事 샘플, 事務室, 諸設備 및 저장품이 정해진 基準에 달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報告書에 의하여 基準 以下 일 때는 都給業者에게 경고장이 송부되고 3개월 후에 再檢査가 실시된다. 다시 또 基準 이하일 때는 그 都給業者는 등록이 취소된다.

(3) 최초의 登録出願者가 필요한 技術基準에 미달할 때는 登録의 不可決定이 6개월간 연기된다. 出願者는 不良工事に 관하여 설명한 文書를 접수한지 6개월 후에 再檢査를 받는다.

이상이 이 審議會의 활동개요로서, 이와 같은 자주적인 制度에 따라 일반가정은 물론 工場, 점포 등의 需用家는 어떤 地方에 있어서도 2 이상의 登録都給者로부터 競争見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都給業者에 工事を 의뢰하면 良質의 材料가 사용되고, 적절한 감독하에 숙련공에 의하여 시공된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다.

또 電氣工事都給業者를 大別하면 (1) 民間都給業者 및 (2) 地區配電局이 있다. 이 地區配電局도 需用家 屋內配線工事中에서 많은 都給工事を 하고 있는데 이 審議會에서는 地區配電局이나 民間都給業者 공히 同一한 취급을 받고 있다.

(iii) 電氣用品에 관한 規制

1952年 暖房器具(보호망) 法(Heating Appliances (Fireguards) Act, 1952)로 지정된 仕様(BS 1954)의 보호망이 없는 電氣暖房器具의 판매를 금지하는 외는 一般電氣用品에 대하여 製造, 販賣, 使用을 규제하는 法令은 없다. 自主적인 制度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BSI 記號(Kite Mark) - 英國標準協會(BSI)가 標準을 작성하여 그 해당 標準에 적합한 電氣用品에 대하여 BSI 記號(Kite Mark)를 사용하고 있다.

電氣器具 및 부속품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lectrical Appliances and Accessories) - 이 委員會는 各電氣局 및 기타의 電氣事業者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英國電氣開發協會(EDA)와 英國標準協會(BSI)의 電氣用品에 관한 연합위원회로서 電氣用品의 安全性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判定을 내리는 業務를 갖고 있다. 이 委員會는 바람직한 電氣用品을 승인한다는 방식보다도 不良電氣用

品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EDA 리스트 - 各地區配電局은 一般家庭用 電氣器具의 판매도 하고 있지만 소름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電氣器具는 試驗을 하고 承認하는 業務를 하고 있다. 이 承認에는 3가지 등급이 있는데, A급은 配電局의 소름에서 販賣하는 것을 승인한 것, B급은 需要者의 요구가 있을 때만 販賣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통상 在庫가 없는 것이고, 또 오급은 승인이 안된 것이다. B 또는 C급이 된 것이 局에서 만족하게 교정처리되었을 때는 上位級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의 試驗은 局自體에서 할 때도 있고 EDA의 試驗所에서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地區配電局 및 EDA 業務에 관해서 兩者가 협력하여 勸獎家庭電氣器具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EDA 리스트이다.

家庭用 電氣器具承認局 (British Electrical Approval Board for domestic appliances BEAS) - 主로 家庭婦人團體에서 電氣器具에 대해 品質上의 全國的記號를 정할 것을 요망하였기 때문에 電氣産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즉, EDA, BSI 및 BEAMA(英國電氣關聯製造者協會)의 聯合委員會에 의한 研究 結論으로서 設立된 것으로, 電氣事業者, 內務者 및 기타 團體의 代表者에 의하여 구성된 團體로서, 우수한 電氣器具에 대하여 承認 마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BEAB는 標準作成에는 관계치 않고 承認基準로서는 해당하는 英國標準(BS)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BEAB의 실제적 承認活動은 1960年末境부터 開始되었다. 그러나 BSI 記號 및 EDA 리스트와의 關係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方法으로 해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몰로니委員會報告 - 各種 家庭用品(電氣器具, 暖房器具, 衣料, 玩具, 食品 등)의 普及, 新種製品의 出現으로 일반대중 가정의 安全保護에 대해서 消費者保護의 견지에서 재검토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59年6月 商務大臣이 몰로니氏(J. T. Molony)이하 12名으로 구성된 몰로니委員會에 이 문제에 관하여 現행 法令을 심사,

필요한 法律改正 또는 施策上의 改正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자문요청하였다.

이 委員會의 答申이 1960年3月 商務長官에 제출되었는데, 그중 電氣用品에 관한 結論을 보면 英國에서의 一般家庭에 대한 電氣安全管理의 一端을 엿볼 수 있어 여기에 그 개요를 소개한다.

「電氣用品 및 電氣設備에 관한 安全問題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每年 家庭에서의 電氣로 인한 死亡事故件數는 全事故死의 1%에도 未達하고 電氣使用量은 10年間에 倍로 늘었으나 使用電力量 100萬kWh當 家庭의 死亡事故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英國의 電氣事業者 및 電氣器機 製造業者가 오랜 세월 각각 安全問題에 절대적인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며, 그 예로서는 英國標準 전반에 걸친 발전과 준수면 및 극히 최근에는 本委員會가 기꺼히 추천하고 있는 「家庭用電氣器具承認局(BEAB)」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4. 電氣安全管理制度的 背景

國民性 英國 國民들 마음에는 法則을 지키고 또 自由를 존중하는 두가지 精神이 항상 併立하고 있으나, 두가지 異分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그 사이에 調和 또는 統制가 行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兩者의 協助, 調和가 상당히 잘 취해지고 있다. 즉, 英國의 國民性은 法則과 自由와의 調和에서 오는 堅實性을 특색으로 한다고 보아야겠다.

法則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世界 어느 국민도 英國人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精神은 일상적 社會生活에서의 질서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制度와 慣習에는 스스로 이에 따르고 이에 위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

英國의 社會的, 政治的 發達は 급격한 혁명적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완성된 것이다. 英國의 政治나 法律은 電氣事業에 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國民의 順應性의 結果로 많은 진보를 보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法律體制 우리나라에서는 法律을 制定할

때 그 法案이 하나의 法律로서의 體系를 完備하고 있어야 하지만 英國에서는 法體系보다 必要 最少限度의 條文만을 法律로서 制定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電氣事業法과 같은 電氣事業에 대한 包括的 法規는 없고 여러 法律을 보지 않으면 法規制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政治的 特色 英國에서는 모든 일이 社會로부터 시작된다. 改革은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위로부터의 官憲의 壓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政治도 地方의 自治行政이 먼저이다. 議會도, 商工業의 發展도, 勞動組合도 모두 國家의 손을 빈 것이 아니다. 한편 英國의 政治는 對話의 政治라고도 할 수 있다.

人種的 背景 (a) 잉글랜드 및 웨일즈…… 잉글랜드는 앵그로색슨의 본거지로서, 英國의 政治的 經濟的 中心地帶로 되어 있다. 住民인 앵그로색슨은 紀元 5世紀 中間부터 紀元 6世紀에 걸쳐 오늘의 덴마크 및 獨逸 北部地方에서 移住해 온 民族으로, 오늘날의 英國民族의 根幹을 이루고 그 言語가 英語이다. 웨일즈가 잉글랜드와 같은 王國이 된 것은 約 700년이 나 前으로 兩者를 統一한 政治를 하여 왔다. 웨일즈는 앵그로색슨보다 먼저 이 나라에 移住해 온 켈트系의 民族이고 그 言語는 웨일즈語(古代 켈트語)를 사용해 왔다.

(b)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 王國과 잉글랜드 王國이 合併하여 웨일즈를 포함한 大브리튼 王國이 成立된 것은 17世紀初의 일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地區는 그 地區의 특수성에서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는 분리된 行政組織이 인정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國務大臣이 管理하고 있다. 住民은 켈트系 스코틀랜드人이다.

(c) 北아일랜드……北아일랜드는 英聯合王國의 一部이지만 北아일랜드 王國으로서 一單位를 이루고 있으며,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달리 英國王國의 總督이 國王의 代表로서 주재하고 있고 自己의 議會와 行政府가 있다. 北아일랜드는 옛날 아일랜드의 一部였으나 1922년에 아일랜드 自治國(現在는 獨立共和國)이 생겼을 때 이에 加入하지 않고 大브리튼과 合併하여 聯合王國의 一部로 되어 있다.

(다음 호에 계속)